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DC

SHINHAN
INVESTMENT
CORP.

Professional-Shinhan

세상에 프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프로는 많지 않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프로를 진정한 프로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정한 프로들의 회사, 신한금융투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7조 ★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가입자별로 운용자하며 상품 미선택시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제1조 (용어의정의)

① 이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함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나,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및 퇴직연금금속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신청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4. 기타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이하 "기록관리업무"라 함)를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이하 "제1항 기관"이라 함)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위탁 등에 대해서는 부속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계약의 계약기간은 이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연금규약의 제출 및 변경)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 수리된 연금규약(별지) 및 노동부의 신고 수리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에는 자체 없이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회사 및 사용자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리업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 정보방법별의 제공)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금융상품의 과거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방집 등을 비교 검토한 후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 방법별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 방법의 구성·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6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자"라 함) 다음 각호의 하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사용자 및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가입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자료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최초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료를 없을 경우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관리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자료를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부속협정서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함)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자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 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부속협정서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함)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자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 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 예정일만 기재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자료를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투자되거나 자동 재투자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 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⑧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하지 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자료를 거절하고 운용자료를 제공 거부 사실 및 그 사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제8조 (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인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며,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연금규약에 의해 선정 또는 결정된 법 제20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의 운용자료를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가입자가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 중 가입자의 운용자료를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

② 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외에도 기존 퇴직금·여충당금의 상환, 퇴직일시금식(퇴직보형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및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급여이전 등에 의한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하 "부담금 명세"라 함)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입할 금액 (부담금을 가입기업이 선택한 납입 주기에 납부하며, 납입 연회시 규약상에 기재된 납입규정에 따라 연회 이자등을 납부

제9조 (부담금 납입연체시의 취급)

- ① 사용자는 제2조제2항1호의 사용자부담금을 규약에 정하여진 기일(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일 다음날부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자산관리 기일에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을 최고(독촉)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산관리 기일에 부담금의 납입을 지연 또는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연·연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연 연체 기간 중의 퇴직급여의 지급은 개인별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납입 지연 연체된 부분에 대한 급여 및 지연 이자 등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자산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자산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하 "운용자산 기일"이라 합니다. 이 날에 자산관리 기일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1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다음 각호의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매년(1회) 이상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갠사 기문이 총괄하는 경우에는 통지와 관련된 회사의 업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적립금 총액 및 자산관리 기일별 적립금액
 2. 가입자의 운용방법별 투자금액, 투자비용, 운용수익률, 운용기간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2. 교부
 3. 정보통신망
 4. 기타 회사가 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규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6조 ★

(가입자에 대한 교육)

관련법에 따라 매년(1회) 이상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단,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교육 방식으로 진행

서면 교육(직접 전달), 대면 교육 등은 가입자 교육 이후 7입자 교육 확인서, 의 내용 기재 후 사용자 명판과 인감날인하여 신한금융투자 가입자 교육 담당자에게 제출

※ 이외의 교육은 가입자 교육 확인서, 교부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2호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제4호 의 2의 경우 또는 제6호의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양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나 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자산을 자산관리 기일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합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 교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항정기 여형 퇴직연금 교육 위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항정기 여형 퇴직연금 교육 위탁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7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부속합정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급여의 지급)

- ①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권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 기일에 급여 지급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관리 기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금규약에서 사용자가 미납된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담금 미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지급 또는 급여이전을 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 및 급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현금성 자산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 또는 이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요청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종소(가입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부담금 계정(이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관하도록 자산관리 기일에 전달합니다.
- ⑥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 수급자격에 갖추지 못한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를 위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4조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양도·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

- ⑦ 제18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납입한 추가 부담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의 적립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제1항과 같습니다.

제19조 (계약이전)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자산 7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자산 7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4조(연체)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자연보상금은 운용자산 7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 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 이 운용자산 7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제 배당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자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0조 (계약의 중도해지)

- ①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 ②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일반 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부속합정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재내용상 거짓이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 ① 사용자가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이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22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사용자는 제도의 설정, 운용관리업무를 수행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부속합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인감신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연체)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동일할 것임을 확인한 후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받아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자연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부속합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부속합정서에는 이 계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회사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합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는 서면합의를 통해 부속합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계약의 승계)

- ① 사용자는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합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액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액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3조 ★ (인감신고)

퇴직연금 업무 처리 시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남긴

제2조 ★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기준)

② 운용방법선택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상품유형을 수기로 기재
기본 기재사항 - 1, 2, 3, 4, 5, 6, 10, 11

제4조 ★★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 평균금액의 금액구별 수수료율 적용
(채차적용)

- ex) 수수료 채차적용 방법
적립금 150억 법인 가정 시
 - 50억원은 0.25% 적용
 - 50억 초과 100억 이하 0.23% 적용
 - 100억 초과 150억 이하 0.20% 적용

계약년차 4년차 10% 할인

계약 5년차 10년차 13% 할인

계약 11년차 이상 15% 할인 적용

단, 타사에서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 최초 도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자 부담금 적립금 수수료 면제

[2022. 8. 16. 개정]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 이 계약의 제15조 2항 중 도입 사유 및 제15조 2항 2호의 의료비는 2020년 4월 30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 합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 적용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의 명칭 및 사용인감날인

(인)

회사

신한금융투자날인

(인)

부속합정서

기업명 기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에 기초하여 []년 []월 []일에 체결한 운용관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 위탁)

- 회사는 계약서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업무 및 계약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
재무투자기관:
 - 계약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문교육기관:
- 회사는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 위탁 시 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서정하는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제1항 각호의 기관에 부과해야 합니다.

★

제2조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기준)

- 회사는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다음 각목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최자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로 발행한 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매조건부 매매의 매수계약
- 국제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 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산관사가 취급하는 예금·적금
-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 그 밖에 「각목부터 마목까지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가입자에게 제시 가능한 운용방법은 법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별첨 [작족주식시행방안](#) 참조)에 포함된다.

- 예금·적금, 최자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회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함), 발행어음, 표지어음
- 국제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 자발채증권
- 투자자격 특수채 및 사채권
- 투자자격 해외채권
- 투자자격 기업어음증권
- 투자자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 해외 상장주식
-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함)
-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합니다)
-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 기타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방법별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 가. 운용방법에 관한 이자, 배당 및 그 외의 이익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나. 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
- 가입자의 자본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타 비용의 명세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정보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 기타 가입자 등이 운용의 자산을 실시하기 위한 정보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내용)

회사는 계약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 포함) 및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장
 - 나. 가입자에 관한 사항(남·여 별합계)
 - 전기 말 가입자수, 자격취득자수, 자격상실자수, 당기 말 가입자수
 - 다. 적립금 현황
 -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및 자산관리기관별 부담금 및 적립금 총액
 - 라. 적립금의 운용상황(운용방법별 현황을 포함)
 - 각 운용방법별로 운용되는 적립금의 현황
 - 마.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급여종류별 지급 및 담보대출, 중도인출 현황)
 - 일시금 및 연금지급 인원수 및 금액,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을 요청한 인원수 및 해당 금액

★★

제4조 (수수료의 종류)

① 계약서 제19조, 제20조,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회사에게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 제22조)
 - 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5조 ★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계약 신청서 상에 명시된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으로 처리

1) 납입주기

- 결산월 기준 회계결산월 기준
- 응당일 기준 : 최초입금일 기준
- ex) 결산월 12월 : 1/1~12/31
- 응당일(4/1입금) : 4/1~3/31

2) 납입방법

- 사용자 부담금 : 회사기 별도납부
- 가입자 부담금 : 가입자 자산채입
-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규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름

적립금 평잔금액	수수료율	비고 (처치적용 예시)
50억원 이하	0.25 %	적립금 3,000억가정 $50억 \times 0.25\%$ $+ (100억 - 50억) \times 0.23\%$ $+ (200억 - 100억) \times 0.17\%$ $+ (1,000억 - 200억) \times 0.15\%$ $+ (2,000억 - 1,000억) \times 0.10\%$ $+ (3,000억 - 2,000억) \times 0.08\%$ (수수료금액 3,41억)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23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0.17 %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5 %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0.10 %	
2,000억원 초과	0.08 %	

단, 퇴직연금(사내 퇴직보통 및 퇴직연금)에서 계약이 존속하는 순증 원본금액 (당사 유출금액 - 타사 유출금액)에 대해서는 1년 단 수수료율로 면제합니다.

- 나. 단, 가목에 불구하고 가입자 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 (계약서 제20조) : 없음
- 계약이 전 수수료 (계약서 제19조) : 없음

② 제1항의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연수	할인율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10 %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15 %
11차년도 이후	20 %

주) 1. 경과연수 산출은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단,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경과연수를 적용합니다.
- 제도시행 경과연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제도의 경과연수 산출은 이 제도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시행일이 규약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도시행일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도시행 경과연수를 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의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유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유대 할인율은 제2항의 계약이 특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업유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는, 회사가 사업 자동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마을기업 공고일,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확인방법	할인적용방법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회사기 사용자의 사업자동등록번호로 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 6번째 숫자 151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 (법인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사업자동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회사기 사용자의 사업자동등록번호로 확인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회사기 사용자의 사업자동등록번호로 확인
자활기업	자활기업인증서 (자활지원센터 발급) 또는 지원대상자 자활기업확인서 (중앙자활센터 발급) 또는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명단 확인	사용자가 자활지원센터 또는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기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사용자의 법인명(단체명/상호명)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자기족부양아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기업유대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제5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시기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수수료 명칭	납입주체	납입시기
운용관리 수수료	사용자	계약응당일 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월 이내
중도해지 수수료	사용자	중도해지시 별도납부
계약이 전 수수료	사용자	계약이 전시 별도납부

단, 가입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 납입 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 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사용자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 수수료 및 계약이 전 수수료의 경우 정할 수 있는 경우 산책에서 처리합니다.

③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 정한 납부시기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해지시의 수수료 정산)

① 계약해지시에 정산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 수수료
해지일 전 날까지의 부담금 및 적립금 평잔금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간 운용관리 수수료율과 경과입수에 따른 일률계산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2. 미청구된 기타 수수료
해지일까지 미청구된 수수료 금액

② 회사는 사용자의 중도해지 신청 시 수수료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 매각 순서)

회사는 계약서 제19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서로 자산을 매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하 각호의 매각순서는 회사와 사용자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성 자산 (현행어음, 보통어음, 환매조각부채권매수계약 등)
2. 환매조각부채권 매수계약 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3.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4. 국내 집합투자증권(채권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5. 국내 집합투자증권(혼합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6. 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7. 해외 집합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순서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8. 장기 예금, 적금 (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9. 실물유가증권 (주식 또는 채권)
10. 파생결합증권 (낮은 금리 우선 위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11. GIC (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제8조 (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영업일은 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해당 기한은 그 직전의 회사의 영업일에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부속합정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부속합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사용자	년	월	일
사업장의 명판 및 사용인감 날인 (인)			
회 사			
신한금융투자 날인 (인)			

별지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별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기업명 기재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년[]월[]일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하"운용관리계약서"라 합니다) 제1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가입자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운용관리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해지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5조(교육내용)

1. 사용자 회사에 위탁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나.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다. 담보대출, 중도인출, 자연 이자 등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마. 퇴직시 급여 지급 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바.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사.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 방법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추가 교육 사항
(다만, 내용과 다목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와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분식투자, 적립식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회사가 정합니다.

제6조(교육방법 및 횟수 등)

1.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기타
2. 서면에 의한 교육 중 교부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기업지에 대한 교육자료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불응할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매년 (1) 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기간, 장소, 일시 등 교육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교육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6조(교육방법 및 횟수 등)

1.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기타
2. 서면에 의한 교육 중 교부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기업지에 대한 교육자료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불응할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매년 (1) 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기간, 장소, 일시 등 교육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교육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7조(수수료)

1.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교육수수료 (단위: 원)		
교육방법	수수료 금액	비고
집합교육	무료	회차당
온라인교육	무료	기업당
교부	무료	1권당
우편	무료	
전자우편	무료	
기타	무료	

2. 회사는 교육이 종료된 후 사용자에게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의 납부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당해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사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협조의무)

사용자는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회사의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1. 사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3.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당해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제10조(현책)

1. 회사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오류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서면(교부를 제외합니다)에 의한 교육방법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공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 교육자료를 발송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교육 재유탁)

1. 회사는 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재유탁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유탁한 경우 유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1. 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의 종료일 이전까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협조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4. 수수료 지급 등 이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운용관리 계약에 대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관할법원)

사용자, 기업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기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기업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자의 주소지 또는 기업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기타)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계약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 및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의 명판 및 사용인감 날인

(인)

회 사

신한금융투자 날인

(인)